

해양수산부 예규 제88호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2014-34호, 2014.02.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재검토 기한 재설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안 제1조~제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7조, 제8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가동시간별”을 “기관 가동시간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비·점검시”를 “정비·점검 시”로 한다.

제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상시운전기관부시험방법」”을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4.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 바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기관 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까지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7조(서류의 제출)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기관의 정비·점검을 기관제조자의 정리지침에 맞게 실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관가동시간별로 정비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항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정비·점검시 계측 또는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의 기록

5.·6. (생 략)

제8조(해상 시운전) 제4조제1항제 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3.·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시행규칙 -----

-----.

제7조(서류의 제출) -----

----- 기관가동시간별 -----

-----.

1. ~ 3. (현행과 같음)

4. 정비·점검시 -----

5.·6. (현행과 같음)

제8조(해상 시운전) -----

-----.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대체방
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 주기관은 한국산업표준 「해
상시운전기관부시험방법」(K
S V 0811)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 라. (생략)

2. (생략)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7년 2
월 16일까지로 한다.

-----.

1. -----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